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8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김민전·김상훈·박충권

김대식 • 인요한 • 김용태

조경태 • 안철수 • 구자근

한지아 · 서일준 · 서천호

서지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.

최근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부로 이관되었는데, 이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수행하고 있 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 정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15조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079호),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08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교육기관"을 "교육 · 보육기관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지방교육"을 "지방교육·보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"을 "교육·보육·과학·기술·체육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5조에 따른 전입금은 제외한다.

제11조제8항 중 "각급학교의 교육"을 "각급학교의 교육 및 보육기관의 보육"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) ①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이 법 공포 당시(법률 제〇〇〇〇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)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

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비. 다만, 「영유아보육

- 법」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국고지원에 대응한 지방비는 제외한다.
- 2.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영유아 보육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경비. 다만,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특수한 여건에 기반한 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
- 3. 영유아 보육 사무의 수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경비
-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같은 항에 따른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공포 당시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회계연도 중일 경우 해당 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	제1조(목적)
체가 <u>교육기관</u> 및 교육행정기	교육·보육기관
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	
하 같다)을 설치·경영하는 데	
필요한 재원(財源)의 전부 또는	
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	
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기준재정수요액"이란 <u>지방</u>	1 <u>지</u>
<u>교육</u>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	<u> 방교육 • 보육</u>
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	
정한 금액을 말한다.	
2. "기준재정수입액"이란 <u>교육</u>	2 <u>il</u>
<u>• 과학 • 기술 • 체육</u> , 그 밖의	육・보육・과학・기술・체육-
학예(이하 "교육·학예"라 한	
다)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	
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	
한다.	
3.・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준재정수입액) ① 기준재	제7조(기준재정수입액) ①
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	

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·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-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 7 ~ ⑦ (생 략)
 - ⑧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 교 이하 <u>각급학교의 교육</u>에 드 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⑨ · ⑩ (생 략) <신 설>

단, 제15조에 따른 전입금은 제	
<u>외한다.</u>	
② (현행과 같음)	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	
~ ⑦ (현행과 같음)	
8	
각급학교의 교육 및 보육기	
관의 보육	
,	

9 · ①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) ① 시·도 및 시· 군·구는 이 법 공포 당시(법률 제○○○○호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)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

- 1.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
 제13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을
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
 비로 부담하는 경비. 다만,
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2
 에 따른 양육수당 국고지원에
 대응한 지방비는 제외한다.
- 2.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영유아 보육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경비. 다만,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특수한 여건에 기반한 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경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
- 3. 영유아 보육 사무의 수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 비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경비
-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같은 항에 따른 공포일이 속한 연도 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 준으로 산정하되, 공포 당시 직 전 회계연도 결산액이 확정되

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 회계

 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

 한다.